



울산광역시 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673호 2010. 12. 31.(금)

훈 령	
-----	--

○ 훈령 제165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보 발행 규정 일부개정규정].....2

고 시	
-----	--

○ 고시 제2010-105호 [2011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4

공 고	
-----	--

○ 공고 제2010-918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6

【 안 내 문 】

- 북구 전자공보는 매주 월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매주 금요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 방법

⇒ 구 홈페이지(<http://www.bukgu.ulsan.kr>) → 행정정보 → 알림마당 → 북구 공보에서 열람

회 람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 북구 편집 : 문화홍보과 (☎ 219-7207 행정 7207)

울산광역시 복구 공보 발행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인)

2010년 12월 31일

울산광역시 복구 훈령 제165호

울산광역시 복구 공보 발행 규정 일부개정규정

울산광역시 복구 공보 발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공보발행은 인쇄와”를 “공보는 종이인쇄로 하되,”로, “방
법으로”를 “방법으로도”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 중 “배부처에”를 “배부처는”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현재 발행하고 있는 전자공보가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0조 1항에 의해 법적효력을 갖지 못해 인쇄물 형태의 종이공보로 배부하고
- 동시에 전자공보도 함께 발행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구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여 주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2조제2항 및 제6조 단서 삭제
- 본문 중 “인쇄”를 “종이인쇄”로 변경

2011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제3항제 7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I. 2011년도 건물 시가표준액 결정

1. 결정항목

가. 건물신축가액기준액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액기준액

나. 건물 시가표준액

- 1) 건물 시가표준액 산출체계(산출체계도, 산출요령)
- 2) 적용지수(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 3) 경과년수별 잔가율
- 4) 가감산특례(가감산 대상 및 가감산율, 적용요령)
- 5) 증·개축 건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 6)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
- 7) 구분지상권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2. 세부 결정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세무과에 비치하고 있는 2011년도 건물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II. 2011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1. 결정항목

가. 차 량 : 30,796종

1)정의 2)용어해설 3)적용요령 4)시가표준액산출 예시 5)기준가격표

나. 기계장비 : 10,156종

1)정의 2)종류 3)기계장비 연도별 잔가율표 4)적용요령 5)산출예시
6)기준가격표

다. 선 박 : 139종

1)정의 2)내용년수 및 감가율 3)적용요령 4)산출예시 5)기준가격
6)잔가율표

라. 항 공 기 : 220종

1)정의 2)내용년수 및 잔가율 3)적용요령 4)항공기 기준가격표

마. 시 설 물 : 1,612종

1)정의 2)종류 3)내용년수 및 감가율 4)시가표준액 5)산출방법

바. 부수시설물 : 401종

1)용어정의 2)종류 3)내용년수 및 감가율 4)시가표준액 5)산출방법

사. 입 목 : 21종

1)용어정의 2)용어해설 3)종류 4)시가조사방법 5)시가표준액 6)적용요령

아. 어 업 권 : 175종

1)용어정의 2)종류 3)시가표준액 4)시가표준액 적용방법

자. 회 원 권 : 2,471종

1)정의 2)종류 3)시가표준액 4)시가표준액 적용방법

차. 지하자원 : 192종

1)정의 2)종류 3)시가표준액 4)시가표준액 적용방법

2. 세부 결정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세무과에 비치하고 있는 2011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10- 918호

울산광역시 복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31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울산광역시 복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개정 이유

상위 법령인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의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 변상금의 부과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울산광역시 복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변상금 부과분할 납부 조항 추가(안 제4조제1항 및 제3항)

- 「도로법」 제9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는 변상금을 부과한다.
-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변상금에 대하여 연 4회 이내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이도록 보완함.

나. 점용료 감면 조항 추가(안 제6조)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전액면제)

-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전액면제)
-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시설·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로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1/2감면)
-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은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도로법 시행규칙」 및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

다. 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조항 추가(안 제7조)

-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 및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을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 점용료 산정기준 인하(안 별표 1)

- 진출입로 중 주유소·자동차 처리소 등 자동차관련시설 및 부설 주차장 10면 이상인 경우 점용요율을 0.025에서 0.02로 인하함.

마. 용어의 정비(안 별표 1의 비교2)

- 점용료 산정기준인 “인접한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로 변경함.

□ 의견 제출

-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1. 2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건설과장,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과(전화 052-219-7442, 팩스 052-219-74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 기타사항

- 개정안 전문을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